연구용역계약서

(협동연구기관 - 참여기업)

동부아남반도체(주) 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(주) 아이피에스 (이하 "을"이라 한다.)는 "단원자층 증착 기술 개발 "(연구책임자 : 김기호) 에 관한 연구 (이하 "연구"라 한다)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.

제 2 조 (범위)

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, "을"연구 완료 후 "갑"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목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.

제 3 조 (기간)

본 계약의 기간은 2005 년 4 월 1 일부터 2006 년 3 월 31 일까지 12 개월로 하며, "갑"과 "을"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 4 조 (연구비)

본 연구에 소요되는 총 연구비 중 "갑"이 지급하는 연구비 금 오천만원정 (₩50,000,000)으로써, "갑"은 다음과 같이 "을"에게 지급한다.

- ① 연구비의 지급(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자)
- "갑"은 연구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(동시에) 현금 부담 중 금삼천오백만원 (₩35,000,000)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고, 과제완수 후 15일 이내에 잔금일천오백만원(₩15,000,000)을 지급한다
- 단, 상기 현금 지급일정은 정부 출연금 지급에 따라 연동 될 수 있다.

제 5 조 (연구보고서 제출)

"을"은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구결과에 관한 최종보고서 1 부를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 중간보고서는 양자 합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. "을"은 "갑"의 중간 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없다.





제 6 조 (연구결과의 귀속)

본 연구결과(Knowhow 및 본 연구결과로 기대되는 특허권 포함)에 따른 특허등에 해당하는 제반 산업재산권에 대한 소유는 공정부분에 대하여는 "갑"이, 장치부분에 대한 부분은 "을"이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. 또한 "을"은 동 연구 결과에 대한 "갑"의 제반 산업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각각의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에 소용되는 비용은 각각의 비용으로 하되 "갑"과 "을"은 산업재산권 등록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
또한 "갑"은 상기 연구와 관련된 것에 한하여 "을"에게 발명 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"을"은 상기 건에 대한 발명이 이루어 진 경우 "갑"이 특허 출원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기술의 실시)

①"갑"은 연구결과 및 산업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사업화 할 권리를 가지며, 상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연구에 투입된 정부의 출연금액 및 경상기술료의 지불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"갑"이 부담한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과 특허출원 보상금으로 이를 갈음한다.

②"을"은 타기관에 우선하여 "갑"에게 기술실시에 관한 계약체결을 제안하여야 한다.

③"을"의 기술 실시 제안에도 불구하고 "갑"이 이를 실시할 의사가 없을 때한하여 "을"은 제 3 자에게 연구 결과물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때 반드시 "갑"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. 또한 "갑"은 상기 제 3 자에 대한 실시 결과가 "갑"의 상업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부당하게 상기 제 3 자의실시를 거절할 수 없다.

제 8 조 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

①(신의성실) "갑"과 "을"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(상호협조) "을"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"갑"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"갑"과 협의하여야 하며, "갑"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을 "을"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(규정준수) "갑"이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재료,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"을"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비밀보장)

"갑"과 "을"은 상호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조항은 상호 일반적인 기업활동이나 연구활동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명칭사용)

"갑"은 본 연구로 취득한 정보를 "을"의 사전 서명 승인없이 본 연구의 목적과 무관하게 광고, 판매촉진,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 며,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"을"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11 조 (권리양도의 제한)

"갑"과 "을"은 상호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권리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
제 12 조 (계약의 해지)

- ①("갑"의 해지) "을"이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, "갑"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"을"에게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("을"의 해지) "갑"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"을"은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함 "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(해지협의) 본조 제 1)항 및 제 2)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"을"은 해지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해지시까지의 연구보고서를 "갑"에게 제출하고, 연구비의 미집행분에 한하여 "갑"에게 반환한다.
- ④(기타)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"갑"과 "을"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.

제 13 조 (중재)

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 본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의 효력, 또는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양자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.

제 14 조 (계약의 변경)

"갑"과 "을"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15조 (계약의 효력)

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제 16 조 (해석)

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 관행에 따르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.

본 계약서는 2 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(또는 서명, 간인 포함)하고 "갑"과 "을"이 각각 1 부씩 보관한다.

유 첨:연구계획서 1부

2005 년 09월 30일

"갑"	" <u>ㅇ</u> "	
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474-1	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번지	
동부아남반도체(주)	아이피에즈 (주)	
대표자 : 윤 대 근	대표자 : 장 호 승	